보건복지부	보 도 자 료 6월 19일(화) 조간(6.18.12:00 이후 보도)		
배 포 일	2018. 6. 18. / (총 14매)	담당부서	아동복지정책과 아동수당 도입 실무추진단
과 장	유 주 헌	전 화	044-202-3410
담 당 자	권 고 운, 서 민 수 이 준 석, 홍 승 표		3424, 3828 3823, 3822

"아이는 미래", 미래를 위한 "아동수당" 내일부터 신청하세요

- 6월 20일부터 사전신청, 9월 21일 첫 수당 지급 -

- 9월 말까지 신청하면 9월분 수당부터 받을 수 있어 (소급지급 가능) -

□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**6월 20일(수)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·접수가 시작**되며, **첫 수당은 9월 21일에 지급**된다고 밝혔다.

* 아동수당은 **매월 25일(주말·공휴일인 경우 전일) 지급**, 9월분 수당의 경우 추석 연휴 등으로 **9월 21일(금)에 지급**

○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**만 6세 미만*** 아동 중 **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**인 아동이다.

* **'18.9월분 수당은 '12.10월 출생아까지 지급, '18.10월분은 '12.11월생까지 지급**
(계산 방법 : A년 B월에는 A-6년 B+1월 출생아까지 지급)

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	6인 가구
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	월 1,170만 원	월 1,436만 원	월 1,702만 원	월 1,968만 원

* 한부모 가구 등 보호자가 1인만 있는 경우, **가구원 수 + 1명**
**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, **가구원 수 + 2명**
*** 6인 이상 가구의 경우, **1명 추가 시 266만 원 더함**

○ **아동의 보호자나 그 대리인***은 6월 20일부터 **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**하거나, **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** 또는 **모바일 어플리케이션(앱)**** 등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.

* **보호자의 친족**(8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), **시설입소아동의 경우 시설종사자 등**

** **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**, 보호자 확인을 위해 홈페이지·앱을 통한 **온라인 신청은 불가**

□ 아동수당은 **신청일을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**되기 때문에 지급 요건에 해당된다면 **6월 20일부터 9월 말까지 기간 중 언제 신청하더라도,**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되는 **9월분 수당부터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.**

* **예시** : **9월 28일에 신청**하고 소득조사 등을 거쳐 **11월에 지급 결정**되더라도, **9~11월분 수당이 한 번에 지급됨**

○ **사전신청 기간이 충분**한 만큼 신청분산 관련 해당 **지방자치단체의 안내**에 따라 **신청 초기를 피하거나, 온라인 신청을 이용**할 경우 **오래 대기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.**

< 연령별 온라인 신청 권장기간 >

	만 0~1세	만 2~3세	만 4~5세	전 연령
신청 권장기간	6.20~25	6.26~30	7.1~5	7.6~

* 만 6세 미만 아동이 2명 이상이면, **큰 아이 기준 연령별 신청기간에 함께 신청 권장**

□ 보건복지부는 **아동수당을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는 방법**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.

① **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**

* 부모가 **사망·가족관계 해체 등**인 경우, **실제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**

② **9월 말까지 신청**하면 **9월분 아동수당**부터 받을 수 있음

③ 대상자가 많으므로 **신청 초기를 피하거나,** 신청분산 관련 **지방자치단체 안내에 적극 협조 필요**

④ **부모 각각** 소득·재산조회 **동의서명 등이 필요**하므로, 아동수당 **신청서를 미리 작성*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****하면 편리함

* **아동수당 홈페이지(www.ihappy.or.kr)** "서식" 및 "신청서 작성 방법" 참고

** **신청인의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반드시 지참**
(대리 신청 시,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, 대리인 신분증 필요)

⑤ **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**하며, 부모 **각각(한부모 가정은 1인) 공인인증서** 필요

* **아동수당 홈페이지(www.ihappy.or.kr)** "온라인 신청 안내" 참고

□ **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**은 "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**경제적 부담을 경감**하고 **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**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**권리와 복지를 증진**함이 목적"이라고 전했다.

○ 더불어 "**보다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** 누릴 수 있도록 부모 등 보호자들의 **적극적인 아동수당 신청을 부탁드린다**"고 밝혔다.

□ 아동수당 **제도 안내, 온라인·오프라인 신청방법, 홍보 자료 등**은 **아동수당 홈페이지(www.ihappy.or.kr)**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○ 관련 문의는 **보건복지상담센터(국번 없이 129)** 또는 관할 **읍·면·동 주민센터**에 연락하면 된다.

<참고1> 아동수당 관련 Q & A

<참고2> 아동수당 홍보 포스터, 가정통신문, 리플렛

<참고3> 아동수당 도입 목적 및 의의

참고1 아동수당 관련 Q & A

1 아동수당 신청 대상은?

○ **아동수당 지급 기준**(연령, 국적 및 주민등록)이 **모두 충족**되면 **신청할 수 있습니다.**

- (**연령**) 아동수당은 **만 0~5세(0~71개월)** 아동에게 지급되며, **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**할 수 있습니다.

* '18.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**'12.10월 출생아까지 신청 가능**

기준 : A년 B월에는	지급 : (A-6)년 (B+1)월 출생까지
2018년 09월분 아동수당은	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
2018년 10월분 아동수당은	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
2018년 11월분 아동수당은	2012년 12월 출생아까지 지급
2018년 12월분 아동수당은	2013년 01월 출생아까지 지급
…	…

- (**국적·주민등록**) **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**(「난민법」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)하고, **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**되어야 합니다.

* 국내 거주 중인 **재외국민, 복수국적자도 신청 가능**

※ 아동수당은 소득·재산조사 결과 **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에게 지급**됩니다.

구분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	6인 가구
선정기준액	**월 1,170만 원**	**월 1,436만 원**	**월 1,702만 원**	**월 1,968만 원**
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경우 (예시)	월 858만 원, 3억 원 이하	월 1,151만 원, 3억 원 이하	월 1,390만 원, 3억 원 이하	월 1,656만 원, 3억 원 이하
소득만 있는 경우	월 1,170만 원	월 1,436만 원	월 1,702만 원	월 1,968만원
재산만 있는 경우	약 11.2억 원	약 13.8억 원	약 16.3억 원	약 18.9억 원

* 한부모 가구 등 보호자가 1인만 있는 경우, **가구원 수 + 1명**

**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, **가구원 수 + 2명**

*** 6인 이상 가구의 경우, **1명 추가 시 266만 원 더함**

2 아동수당은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?

○ 아동수당은 **아동의 보호자**(친권자·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·양육하고 있는 사람) **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**

- **부모가** 사망, 이혼, 가출, 가족관계 해체, 교정시설 입소, 중증질환 등으로 **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**에는 **아동을 사실상 보호·양육하고 있는 사람**이 보호자가 됩니다.

  * 아동의 보호 상태에 따라 **조부모 또는 외조부모, 친인척(삼촌, 이모 등), 위탁부모, 예비 양부모, 아동복지시설장 등**이 보호자가 될 수 있음

- **보호자의 친족 등***은 보호자의 대리인이 되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가족관계등록부 등 **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**와 **보호자의 위임장**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
  * 8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

3 아동수당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?

○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**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**하여 신청하거나,

○ **복지로 웹사이트**(www.bokjiro.go.kr) 또는 **모바일 어플리케이션(앱)**을 통해 **온라인으로도 신청**할 수 있습니다.

- 단, **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**하며, 그 외의 경우에는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합니다.

- **온라인으로 신청**하기 위해서는 **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**합니다. 부모가 동시에 접속할 필요는 없으며, 각각 별도 접속하고 전자서명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* 부 또는 모의 사망·이혼 등 **한부모가정인 경우,**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**부 또는 모 1인의 전자서명으로 신청 가능**

  ** **19세 이상 자녀**가 있으면 **자녀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도 필요**

4 아동수당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?

○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**아동수당 신청서*를 제출**해야 합니다.

  * 신청서식은 **읍면동 주민센터 비치**, 아동수당 **홈페이지(www.ihappy.or.kr)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**

- 신청서는 **아동, 부모*, 아동의 형제자매를 기재**하고 서명, 지장, 인감**을 통해 **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여 제출**해야 합니다. 명의자 본인이 서명해야 하나, 19세 미만 자녀는 보호자가 대리 서명 할 수 있습니다.

  * 부 또는 모의 사망·이혼 등 **한부모가정인 경우,**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**부 또는 모 1인의 서명 등으로 신청 가능**

  **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**인감증명서 제출 필요**

○ 또한,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시 **신분증*을 지참**해야 합니다.

  *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등록증, 청소년증 등

-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**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,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**해야 하며, **보호자의 위임장도 제출**해야 합니다. 위임장 서식도 아동수당 홈페이지(www.ihappy.or.kr)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

○ 신청 접수 이후 소득·재산조사 과정에서 **임대차계약서,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**, 담당공무원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방문,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- 특히, **전·월세 거주자 중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이 안 된 경우,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권장**합니다.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나, 소득·재산조사 과정에서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5 언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나요?

○ 아동수당 **사전 신청·접수는 6월 20일부터 시작**됩니다.

- 아동수당은 **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**되기 때문에, **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6~8월 신청자와 동일하게 9월분 수당부터 지급**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**지자체별로 소득·재산조사 등 행정절차가 진행**되어야하므로 **지급결정 및 계좌입금 시기**는 해당 **지역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**

- 예를 들어, **9월 28일에 신청**하여 행정절차 진행으로 **11월에 아동수당 지급 결정**된 경우, **11월분 지급일에 9~11월분 수당이 한 번에 지급됩니다.**

○ **출생(출생신고일 기준)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**한 경우, **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**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.

- 예를 들어, **10월 1일에 아동이 출생**하고 **11월 29일에 아동수당을 신청**하여 **12월에 지급 결정**된 경우, **12월분 지급일에 10~12월분 수당이 한 번에 지급**됩니다.

○ 아동수당은 **처음 도입되는 제도**이고 **대상자 수(198만 가구)가 많기 때문에**, 일시에 신청이 몰리면 **대기시간 발생 등 불편이 우려**됩니다.

- **신청기간(6.20~9.30에 신청하면 9월분 수당부터 지급)이 충분히 제공**되는 만큼, **사전신청 초기 등 신청이 몰리는 기간은 가급적 피해서** 신청하시고, 신청분산 등을 위한 **지자체 안내에 협조해주시기를 부탁**드립니다.

< 연령별 온라인 신청 권장기간 >

	만 0~1세	만 2~3세	만 4~5세	전 연령
신청 권장기간	6.20~25	6.26~30	7.1~5	7.6~

* 만 6세 미만 아동이 2명 이상이면, **큰 아이 기준 연령별 신청기간에 함께 신청 권장**

6 아동수당 지급 금액은?

○ 아동수당은 **대상아동 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**

○ 다만,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**소득역전 현상을 방지**하기 위해, **"소득인정액 > 선정기준액 - 가구 내 수급아동 수 × 5만 원"인 가구는 아동수당이 5만 원으로 감액됩니다.**

※ 감액대상 가구는 전체 수급가구의 0.06% 정도로 추산

- 예를 들어, **4인 가구 선정기준은 1,436만 원**이므로 가구(부, 모, 7세 자녀, 3세 자녀)의 **소득인정액이 1,431만 원 이하면 아동수당 10만 원**을 받게 되지만

- **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431만 원 초과 1436만 원 이하**인 경우에는 **아동수당이 5만 원으로 감액 지급**됩니다.

7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?

○ 부모가 보호자가 아니면 **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** 해야 합니다. 읍면동 주민센터 **담당공무원과 상담**하여 아동의 보호 상태를 설명하고 **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**하시면 됩니다.

○ 사망·이혼 등으로 **아동의 부모가 모두 없어**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아동의 보호자로서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에는, **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서명**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8 아동수당 신청 시 신고해야할 사항이 있나요?

○ 아동이 **국외에서 출생**했거나 **복수국적**인 경우, 그 사실을 **아동수당 신청 시에 신고**해야합니다.

- **신고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**, 지급된 수당에 **이자까지 가산하여 전액 환수, 과태료 부과**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

9 자녀 2명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?

○ **0~5세 자녀가 2명**이고 주민등록상 **주소지가 각각 다른 경우**에는, 각 주소지 소재 **읍면동 주민센터 중 어디에서나 두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.**

- 단, **온라인 신청은 자녀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능**합니다.

※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**부모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**하시기 바랍니다.

10 보육료(또는 양육수당)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?

○ 보육료·유아학비 지원, 양육수당 지급 등 **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,**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**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**

- 이 경우, 기존에 **양육수당을 신청하여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.**

참고2 아동수당 홍보 포스터, 가정통신문, 리플렛

□ 포스터

□ 어린이집, 유치원 등 가정통신문

□ 리플렛 (겉지)

□ 리플렛 (속지)

참고3 아동수당 도입 목적 및 의의

□ (**목적**)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**경제적 부담을 경감**하고 **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**함으로써 아동의 **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** (「아동수당법」 제1조)

○ **아동수당 수급권자는 아동**(법 제2조)이며, 보호자는 **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수당을 사용**해야 함 (법 제3조)

□ OECD 35개 가입국 중 **우리나라, 미국, 터키,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**에서 **아동수당 제도 운영 중** ('16년 말 기준)

○ 아동수당은 주요 국가에서 **아동과 양육가구 지원**을 위해 **오래전부터** 운영 중인 **기본적인 사회복지제도**

* **프랑스**(1932년~), **영국**(1945년~), **일본**(1972년~) 등

□ **아동·가족에 대한 지출** 확대는 **미래에 대한 투자**이나, 우리나라는 **OECD 절반에 불과**

○ 특히 **현금·서비스·조세지출이 균형적으로 제공**될 때 **양육부담의 효과적 경감**이 가능하나, **우리나라 현금지출은 매우 부족**

	GDP 대비 아동가족지출	현금급여	서비스·현물	조세지출
한국	**1.3%**	**0.18%**	0.95%	0.20%
프랑스	**3.7%**	**1.56%**	1.35%	0.74%
OECD 평균	**2.4%**	**1.25%**	0.94%	0.23%

* 출처 :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13, OECD